

**민원종류**

일반민원

**제목**

은평 뉴타운 관리소장 임상현과 대청그린웍스 탈세 계획

**내용**

## 1. 첨부자료들과 상황 설명

지난 2.20일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임상현이 [안건4]로 제출한 자료들로서,  
 자료1은 대청그린웍스 재계약 의결 주문, 자료2는 대청그린웍스의 재계약 신청서다  
 그리고 [수의계약 대상](자료3) 제9호에 해당된다며 수의계약을 의결했다.  
 대청그린웍스가 기존사업자이니(자료4), 언뜻 보면 모든 게 합법적인 것으로 보이는데, 아니다

## 2. 문제점: 분할/쪼개기 계약

## (1)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

재계약이란 기존계약과 동일한 물건 또는 대상(이 경우는 방역관리+수목방제)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.  
 일반 상식으로 보아도 임대차 계약 등 같은 대상에 대하여 금액, 기간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 계약서는 하나다.  
 그 반면에 쪼개기 계약은 2개이므로 재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계약인 것이다. 따라서 [수의계약 대상] 제9호를 적용할 수 없다.  
 그럼에도 의결 승인.

## (2) 더 심각한 위법

① 임상현과 대청그린웍스와의 위법을 방관한다면,  
 방역관리, 수목방제 2건 중 하나만 대청그린웍스보다 경쟁력 갖춘 업체의 참여 기회는  
 2024년에 이미 원천봉쇄되었고 앞으로도 없다.  
 왜냐하면 대청그린웍스는 [수의계약 대상] 제9호의 기존사업자 자격으로 "수의계약 독점"할 수 있기 때문이다.

② 대법원 판결, 동일한 공사 쪼개기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(자료5, case.pdf)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쪼개기 계약 방지하기 위하여

가. [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] 수의계약 대상 제6호의 단서 조항과

나. [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] 제68, [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
 시행령] 제77조에

명백하게 분할 계약 금지를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임상현과 대청그린웍스는 위법한 쪼개기 계약으로 탈세 계획한 것이다

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, 임상현은 현재 증거조작 중이다

2026.3.14

김명호

첨부자료

1. 관리소장 임상현이 [안건4]으로 제출한 대청그린웍스 재계약 의결 주문
2. 대청그린웍스의 재계약 신청서
3. [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]의 수의계약 대상
4. 2024년도 대청그린웍스 계약
5. 대법원 판결, 동일한 공사 쪼개기 계약은 총액으로 법 위반 판단해야...

첨부 파일

자료4.jpg 자료3.pdf 자료2.jpg 자료1.jpg case.pdf

---

## 처리기관 정보

처리기관

행정안전부